

# ‘캐릭터라이선싱페어 2019’ 및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19’ 동시 개최에 대한 업무 협약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라 한다)과 (주)코엑스(이하 “Coex”라 한다)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이하 “SICAF 조직위”라 한다)는 ‘캐릭터 라이선싱페어 2019’(이하 “KCLF 2019”라 한다)와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2019’(이하 “SICAF 2019”라 한다)를 동시 개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제1조(목적)

본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이 “KCLF 2019”와 “SICAF 2019”를 동시 개최함에 있어 상호간의 업무, 역할, 의무와 권리 및 기타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용어정의)

이 협약에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① “KCLF 사무국”이라 함은 “KOCCA”와 “Coex”가 “KCLF 2019”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행사 집행 조직이다.
- ② “사업비”라 함은 “KCLF 2019”와 “SICAF 2019” 행사를 위해 “KOCCA”, “Coex”, “SICAF 조직위”가 투입하는 비용과 각 행사로 발생한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 ③ “수입”이라 함은 “KCLF 2019”와 “SICAF 2019” 각 행사 참가사의 부스비 및 관리비, 관람객 등의 입장료, 그리고 협찬, 후원 및 기타수입 등 각 행사로 발생한 금액을 말한다.

## 제3조(역할분담)

- ① “KOCCA”와 “Coex”와 “SICAF 조직위”는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서로 노력하며 “KCLF 2019”와 “SICAF 2019”的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인다.
- ② “KCLF 2019” 행사 추진 및 행사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KOCCA”와 “Coex”가 가지며 “SICAF 2019” 행사 추진 및 행사 운영에 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SICAF 조직위”가 가진다.
- ③ 상기 ②항에 근거하여, 동시 개최되는 “KCLF 2019”와 “SICAF 2019”的 행사 추진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되, 두 행사의 홍보 등 협력 가능한 사안은 공조한다.

#### 제4조(행사 기간 및 장소)

① “KCLF 2019”와 “SICAF 2019”의 행사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설치 : 2019. 7. 15~16
- 행사 : 2019. 7. 17~21
- 철거 : 2019. 7. 22

② 장소는 다음과 같다

- “KCLF 2019” : 코엑스 A1, A2, A3, B홀 전관, 스윙스페이스, 그랜드볼룸 전체 (101~105호) 및 컨퍼런스룸(북)(201-211)  
\* 그랜드볼룸 및 컨퍼런스룸 임대기간 : 2019. 7. 15 ~ 19
- “SICAF 2019” : 코엑스 A4(2,592m<sup>2</sup>)

③ 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SICAF 2019에 할당하는 전시 면적 및 회의실 면적은 “KOCCA”와 “Coex”와 “SICAF조직위”의 사전 동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행사 운영 업무 분장)

- ① “KCLF 2019”와 “SICAF 2019”를 동시 개최함에 있어 “KCLF 사무국”과 “SICAF조직위”는 [별첨1]과 같이 행사 운영 업무를 분장한다.
- ② “KCLF 2019”와 “SICAF 2019”를 동시 개최함에 있어 서로 간의 연계 프로그램 혹은 공동 이벤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되, 이 건에 관한 모든 권리와 책임은 공동으로 한다.
- ③ 제4조 ②항에서 “SICAF 2019”를 위해 배정된 A4홀에 대한 운영의 권리와 책임은 전적으로 “SICAF조직위”에 있으며, “SICAF 2019” 전시관 내에서 발생한 도난, 화재, 안전사고 등에 관해서는 “KCLF사무국”, “KOCCA”, “Coex”가 책임지지 않는다.

#### 제6조(소유권)

“KCLF 2019” 행사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KOCCA”와 “Coex”에 있으며, “SICAF 2019”와 관련된 모든 저작권은 “SICAF조직위”에 있다.

#### 제7조(사업비 지출)

- ① “KCLF 2019”와 “SICAF 2019”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는 각 행사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주체가 별도로 운영 및 지출 한다.
- ② 단, “KCLF 2019”와 “SICAF 2019”를 운영함에 있어 공통 경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행사의 주체가 협의하여, “KCLF 사무국”에서 선 지출하고 사후 정산 한다.  
※ 주요 공통 경비 내역 [별첨2] 참조

## 제8조(수입 및 수의 배분)

- ① “KCLF 2019”와 “SICAF 2019” 행사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각 행사의 권리와 책임을 가진 주체가 별도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단, 제5조 ①항에 의거하여 행사 전체 관람료 수입과 전시장 부대시설 수입은 “KCLF 사무국”으로 귀속된다.
- ③ 상기 2항의 전시장 부대시설 수입 중 “SICAF 2019” 참가업체에 의해 발생한 수입은 “SICAF 조직위”에서 관리 및 징구하여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KCLF 사무국”으로 정산 지급한다.

## 제9조(협약기간)

- ①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시행한다.
- ② “KCLF 2019”와 “SICAF 2019”的 성공적인 수행과 발전을 위해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사후 정산 등을 고려한 201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10조(약정변경 및 해지, 양도)

- ① 불가항력으로 인해 “KCLF 2019”와 “SICAF 2019” 각 행사 주최자의 역할과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각 행사의 주최자는 상호 합의하에 협약을 변경 혹은 해지할 수 있다.
- ② 불가항력이란 천재지변, 전쟁, 화재, 전염병, 폭동, 국가시책 변경 등을 말하며 여타 유사한 중대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해당한다.
- ③ 본 업무협약의 변경이나 추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태를 갖추어서 서면으로 합의되었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 ④ “KCLF 2019”와 “SICAF 2019” 각 주최자는 사전 협의와 동의 없이 협약서상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변경, 취소 혹은 제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1조(위약금 및 손실, 손해 배상)

- ① “KCLF 2019”와 “SICAF 2019” 행사가 어느 한쪽에 의해 일방적으로 취소될 경우, 행사 취소 원인제공자는 행사장 사용료를 비롯하여 양 행사 동시 개최를 위해 기지 출된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또한,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시 청구금액의 타당성 확정 후 부담한다.
- ② 단, 제10조 ②항에 근거하여 “KOCCA”, “Coex”, “SICAF 조직위”的 상호 사전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업무협약을 변경 혹은 해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실, 손해 등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위약금 및 그 손실, 손해 등에 관하여 보상, 배상 등을 할 의무가 없다.

#### 제12조(분쟁 해결)

- ① 본 업무협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내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KCLF 2019”와 “SICAF 2019” 각 주최자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 ② ①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KOCCA”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

#### 제13조(비밀유지)

“KCLF 2019”와 “SICAF 2019” 각 주최자는 양 행사 동시 개최와 관련한 제반 사항 및 약정 내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으며, 어느 일방이 양 행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및 협약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제3자에게 발설, 유포하는 등으로 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시 개최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이러한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업무협약서 작성)

본 업무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한 약정서 3부를 작성하여 “KOCCA”, “Coex”, “SICAF조직위”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7. 3.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김영준 (인)

주식회사 코엑스  
대표이사 이동원 (인)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장 방중혁 (인)